도민이 중심
신뢰받는 의회

제417회 정례회
2024. 6. 11.(화)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충청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이동우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4년 5월 29일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5월 31일

3. 제안이유

충청북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친환경 자재인 목재 이용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으나, 이에 대한 인식 부족, 목재문화 계승·교육 및 목재제품 육성 등 지역목재 이용 전반에 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으로,

지역목재 소비를 위한 재정지원과 지역목재 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 자원의 이용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.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, 도지사의 책무,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(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)

나.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및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

다. 목재문화의 진흥,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(안 제7조 및 제8조)

라. 목재문화체험장 조성,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○ 충청북도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등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목재 이용을 활성화 하는 지원근거 마련 및 탄소중립 실현 등에 기여하는데 그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○ 본 조례안은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“목재이용법”)」 제4조에 의거,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·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 추진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을 위해 조례로 제정함은 정당함.

○ 충청북도의 경우, 산림면적(65%)이 강원(81%), 경북(71%), 경남(67%) 다음으로 많고, 등록된 목재생산업(417개소)은 강원도에 이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목재 이용 접근성이 높고, 지리적 장점을 활용한 목재생산업 활성화와 신기술 개발 및 우수 목재제품을 생산·경영하는 선도적 목재도시로써 자리매김하려는 목적과 의의에 부합하여 적합함.

《참고》 2023년 목재생산업 등록현황

광역자치단체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
합 계	288	217	84	658	59	57	61	30
원목생산업	4	5	15	18	19	20	11	14
제재업 제1종	0	49	13	183	13	8	20	3
제재업 제2종	1	4	2	33	4	2	1	0
제재업 제3종	1	8	1	8	3	6	2	0
제재업 제4종	6	2	12	30	3	3	10	2
목재수입유통업	276	149	41	386	17	18	17	11
광역자치단체	경기	강원	**충북**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
합 계	1,131	728	**649**	493	656	434	650	554
원목생산업	246	497	417	310	378	240	346	104
제재업 제1종	167	97	74	58	107	85	103	143
제재업 제2종	51	1	11	3	3	6	4	28
제재업 제3종	29	8	7	16	20	13	11	44
제재업 제4종	116	86	77	61	60	35	106	109
목재수입유통업	522	39	63	45	88	55	80	126

* 출처 : 산림청(2023년 목재생산업 등록현황)

○ 조례 제정을 통해 추계된 소요예산은 매년 3천만원 가량(5년간, 총 15천만원)이고, 도비 등의 재원조달 방안이 강구되어 있기에 현행 당면시책의 예산지원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음.

○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,

-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.
-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.
- 안 제3조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.
- 안 제5조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7조는 충청북도 목재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규정함.

○ 조례안 예고(‘24. 5. 31. ∽ 6. 7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○ 본 조례는 ‘24년 5월 기준 4개 광역자치단체가 제정·시행 중이며, 문제된 사항이 없음.

○ 제정안은 총 14개의 조문으로써, 조문상의 내용과 구성은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도록 하였고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안은 탄소중립 실현 및 목재문화 진흥과 목조건축 활성화 등으로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입법 취지에 맞고, 타당하다고 판단됨.

○ 아울러 관계부서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고, 상위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 및 조문 체계 등의 형식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○ 이에 본 조례안이 규정하는 지역 목재의 이용 및 목재산업 확대, 목조건축 활성화에 대한 성과는 소관부서의 업무혁신 노력에 따라 탄소배출량 저감 등의 다양한 지역목재 자원 활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.